

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(제43조 관련)

구분	금액	비고
1차 심사비용	100만원	신청 건당
2차 심사비용	100만원	신청 건당

※ 비고

1. 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기관에 납부한다.
2. 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(현장실사위원의 수당, 여비 등)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3.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에 관하여는 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서 조사·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단가를 준용한다.
4.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